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6.

발 의 자 : 박홍배 · 이수진 · 송재봉  
한준호 · 민병덕 · 이정현  
홍기원 · 박 정 · 김우영  
김남근 · 윤준병 · 안도걸  
이광희 · 이정문 · 김기표  
최혁진 · 허성무 · 부승찬  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.

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, 수질 등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.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이 대기·수질 오염물질 배출에만 그치지 않고, 온실가스 배출, 에너지 사용, 폐기물 발생, 용수 사용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.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저감에 중심을 두고 있어, 기후위기 대응, 자원순환, 물의 재이용 등 변화된 환경관리

과제를 통합허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, 자원순환,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,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, 용수 사용 절감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·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 및 제9조 등).

##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(이하 “허가조건”이라 한다)을 붙일 수 있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·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.

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
2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조제6호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
3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

제6조제4항(중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6조제4항”을 “제6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제6조제4항”을 “제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후단 중 “제24조제4항”을 “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이 변경되거나 제24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제2호 중 “제6조제4항”을 “제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통합허가) ①·②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통합허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(이하 “허가조건”이라 한다)을 붙일 수 있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·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</li> <li>2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조제6호의 자원순환</li> </ol>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(이하 “허가조건”이라 한다)을 붙일 수 있다.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·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④ ~ ⑨ (생략)

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

3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⑤ ~ ⑩ (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)

제7조(허가기준 등) ① (생략)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·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제출자는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략)

제9조(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

제7조(허가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제6조제5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③ -----  
-----  
----- 제6조제5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
제29조(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기관(이하 "환경전문심사원"이라 한다)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
3. ~ 5. (생략)
- ②·③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이 변경되거나 제24조제4항-----.

제29조(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제6조제5항 -----  
-----
3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